

수주업체의 섬유 임가공 비용 청구 vs 발주사의 임가공 품질하자 손해배상책임 반소 -  
부주의 또는 오류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



## 1.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 (1) 임가공업체 수주회사 원고의 임가공료 지급 청구에 대하여 발주회사 피고가 원고의 작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사안 -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연사가공에 관한 임가공계약에 따라 연사가공작업을 수행한 후 미지급 임가공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본소), 피고는 원고의 연사작업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음(반소)
- (2) 발주사 피고는 1심에서 반소 제기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반소장과 달리 신뢰

이익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면서(전체 손해액이 반소청구취지 금액에 비해 적음)  
위 손해액과 미지급 임가공대금을 상계한 잔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3) 원심은 원고의 미지급 임가공대금 채권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하자 주장 역  
시 인정한 다음 손해액을 2021. 8. 31. 자 준비서면의 주장을 기초로 판단하였고,  
일부 인정된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  
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4) 대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반소장과 준비서면의 주장이 손해의 인  
정근거(이행이익/신뢰이익), 구체적인 항목 및 금액에서 상이한 경우 일부 주장을  
철회하고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취지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  
하여야 하고, 피고가 동일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본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상계항변  
을 하면서 이와 함께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경우 각 주장의 관계  
등에 관해서도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2. 대법원 판결 요지

(1) 법원은 소송사건을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올바른 사실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사실의 확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136조 제1항에서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사실심법원은, 당사자가 어떤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그 주장에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그에 관하여 변론을 하게 하는 등으로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할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다6020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등 참조).

(3)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복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실이익은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

국제계약, 영문계약, 계약분쟁, 손해배상, 민형사소송,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